

2018. 9.3.(금) ~
9.17.(월) / 15일간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심사결과

의안명	심사결과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원안가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2017 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안	원안가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주요 내용

1.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8. 8. 27.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과 정부조직의 명칭 등 조문의 단순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개별 입안에 따른 비효율 제거
- 일본어 투나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 일괄 개정(안 제2조) : 23건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구명 일괄 개정(안 제3조) : 13건
- 금치산·한정치산자 용어 일괄 개정(안 제4조) : 1건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일괄 개정(안 제5조) : 305건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4차 본회의 / 2018. 9. 17.)

2.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2018. 8. 27.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축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별표]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조 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개별 조례에 규정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우리 군 축제 장소가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 순환버스 운영을 통해 관광객이 축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예산 지원 규정 신설(안 제10조)
 - 축제위원회 또는 축제 추진 단체, 법인에 축제 사업 예산 지원
 - 편의제공 규정 신설(안 제14조)
 - 축제장 방문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 운영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4차 본회의 / 2018. 9. 17.)

3.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 제출일자 : 2018. 8. 27.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립 중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입주자의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주택운영과 관련한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함

▪ 주요내용

-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목적 규정(안 제1조)
-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정(안 제2조)
 - 세입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 시설임차 수입, 정부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품, 이자수입 등
 - 세출 :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및 예비비, 그 밖의 운영비 등
-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준용에 관한 사항 등 규정(안 제3조~제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4차 본회의 / 2018. 9. 17.)

4. 장성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2018. 8. 27.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2020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5조(운영기간) 폐쇄기간 변경

(당초 : 2020년 12월 31일 → 변경 : 2023년 12월 31일)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4차 본회의 / 2018. 9. 17.)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2018. 8. 27.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중 운임 지급 기준이 개정 시행(대통령령 제26042호, 2015. 1. 6.)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기준 준용(안 제4조)

(현행)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 70,000 광역시 : 60,000 그 밖의 지역 : 50,000

(개선)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규정 변경(안 제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4차 본회의 / 2018. 9. 17.)

6.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 제출일자 : 2018. 8. 27.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법인카드 적립금을 장성군 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해 지역인재 발굴 육성에 활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단위 : 천원)

부서	출연 기관	2018년 출연금	사업 내용	관련 법령
재무과	장성장학회	28,920	지역인재 발굴 육성 교육기반 마련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4차 본회의 / 2018. 9. 17.)

7.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제출일자 : 2018. 8. 27.
- 제출자 : 장성군수
- 주요내용

1) 일반회계

○ 세 입

- 예산액 : 424,495백만원
- 징수결정액 : 507,497백만원
- 수납액 : 499,630백만원
- 미수납액 : 7,867백만원

○ 세 출

- 예산액 : 424,495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 : 73,850백만원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332백만원
- 전용 증감액 : 107백만원
- 이체액 : 425백만원
- 예산현액 : 498,346백만원
- 지출액 : 345,421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96,779백만원
- 불용액 : 56,146백만원

2) 특별회계

○ 세 입

- 예산액 : 17,862백만원
- 징수결정액 : 19,315백만원

- 수 납 액 : 19,059백만원
- 미 수납액 : 256백만원

○ 세 출

- 예 산 액 : 17,862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 : 572백만원
- 예 산 현 액 : 18,435백만원
- 지 출 액 : 8,426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646백만원
- 불 용 액 : 5,363백만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4차 본회의 / 2018. 9. 17.)

8. 2017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출일자 : 2018. 8. 27.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주요내용

○ 지출개요

- 지출결정액 : 386백만원
- 지 출 액 : 332백만원
- 불 용 액 : 54백만원

○ 지출내역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2, 시차단방역비 등 320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4차 본회의 / 2018. 9. 17.)

9. 2017회계연도 장성군 각종 기금 결산안

- 제출일자 : 2018. 8. 27.
- 제출자 : 장성군수
- 주요내용

○ 지출개요

- 조성액 : 7,587백만원(전년도까지 6,650, 당해연도 937)
- 지출액 : 405백만원
- 불용액 : 7,182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7,182백만원

○ 지출내역

- 재해예방사업 259, 장학금 및 노임복지사업 지원 65,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75, 모범음식점 지원 6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4차 본회의 / 2018. 9. 17.)

1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출일자 : 2018. 8. 27.
- 제출자 : 장성군수
- 주요내용

1. 세입 : 449,106백만원

- 가. 삭감(일반+특별) : 해당없음
- 나. 증액(일반+특별) : 해당없음
-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조 정 액			수정 예산액
		계	증 액	감 액	
계	449,106	-	-	-	449,106
일반회계	429,157	-	-	-	429,157
특별회계	19,949	-	-	-	19,949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2. 세 출 : 449,106백만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 995백만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1) 일반회계 : 995 백만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 요구액 (제출 예산액)	조 정 액			수정 예산액
		계	증 액	감 액	
계	449,106	0	995	995	449,106
일반회계	429,157	0	995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995	429,157
특별회계	19,949	0	0	0	19,949

라. 삭감조서 : 붙임과 같음

1) 일반회계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4 건	1,195,000	995,000	200,000
127	401-01	북하면 대악리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5,000	35,000	
191	401-01	관광지 편의시설 입지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300,000	300,000	
234	402-02	2017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개보수지원	350,000	150,000	200,000
260	401-01	배수펌프장 우수지활용 주 주차 장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	510,000	510,000	

2) 특별회계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1) 일반회계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 1,800백만원(증 995백만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4차 본회의 / 2018. 9. 17.)